



제318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3.

자치행정위원회

#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, 조문의 모호한 주체를 명확히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
  - 기획조정실장 → 민원총괄 업무담당 국장(안 제3조제2항)
  - 감사관, 의회법무과 → 감사부서의 장, 법무부서(안 제3조제3항)
- 조문의 모호한 주체 명확화
  - “필요한 자료를 제출” 하는 주체를 “관련부서” 로 규정(안 제10조제1항)
  - “회의 일정을 통지받는” 주체를 “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” 으로 규정(안 제10조제3항)
- 수당 지급 대상 정비
  - “위촉직 위원 및 이해관계인 등” → “위촉직 위원” (안 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 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민원여권과
- 라. 입법예고 : 2026. 1. 8. ~ 2026. 1. 28.(20일간) /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,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으로 자료 제출 및 회의 일정 통지 주체를 명확히 하고, 수당 지급 대상을 ‘위촉직 위원’으로 한정하여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음.
-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☑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**

제34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장기 미해결 민원,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·방지 대책
  2.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
  3.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
 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☑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

제38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
2.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
3.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
4.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·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민원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
2.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
3.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

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,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, 관계부서의 장, 감사부서의 장,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·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: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
재정 수반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: 주요 개정 내용이 재정 변동을 수반하지 않음

-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(안 제3조제2항, 제3항) 정비
- 회의 절차 관련 모호한 주체에 대한 명확화(안 제10조제1항, 제3항)
- 수당 지급 대상 정비(안 제13조) : 이해관계인 등 삭제

### 4. 작성자

행정국 민원여권과장